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

제출년월일 : 1998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신체·정신적 장애로 직권면직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장제도를 폐지함(안 제8조)
- 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권면직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정비함(안 제10조)
- 다.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조례 표준안 1부.
- 관계법령(발췌) 1부.

/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 중 “6월이상”을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 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략>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삭제 >
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④< 삭제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직권면직)..... 1.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1.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 신 설 >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신 설 >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증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체)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생략>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생략>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6708, “관인생략”

경상북도

우 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3-5 / 전화 (053)950-2212 / 전송 950-2219
내무국 총무과 / 과장 김영재 / 인사계장 이춘우 / 담당 이강학

문서번호 총무 12100 - 123

시행일자 1998. 9. 25. (3)

(경유)

수신사장·군수
참조 총무·내무과장

제 목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12100- 451(98. 9.17)의 이첩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안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균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군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가급적 '98. 9월중으로 개정공포토록 조치하기바라며
3.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내용의 공포에정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략하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친절 내무국장 일 훈석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